



<그림 17> 소화기 및 비상통로 배치도 예

- (4)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는 75럭스 이상 조도를 유지하고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(5)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는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으로 작동가능한 화재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화재발생시 즉시 화재 경보기를 작동하고,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 신속 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소방 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체제를 확립하 여야 한다.
- (7)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소화기는 소방대상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설치하되,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소형수동식 소화기는 20미터, 대형수동식 소화기는 30미터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. 또한, 모든 근로자에게 소방시설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8) 외부 협력업체 근로자가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화기작업계획서의 내용 과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자를 배치한 후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